

[여기에 입력]

홍보 서비스 대행 계약서

고객사 회사명(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홍보 회사명(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홍보 서비스 대행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홍보 서비스 대행을 위임함에 있어 상호 신뢰로서 업무를 진행하며 “을”은 “갑”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동반자로서 양사간의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서비스 대행 범위】

1. 홍보 서비스 범위
 - 1) 월별 전략 플랜
 - 2) ‘갑’과의 업무 협의를 위한 회의 참석(월 최대 2회 기준)
 - 3) 전략 컨설팅
 - 4)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의 Publicity 업무
 - 5) 기존 Publicity 업무 외 Campaign, Promotion, On-line PR에 관련된 제안서 작성 및 실행
 - 6) 기사 리뷰
 - 7) Media management
 - 수시 기자 요청 사항 협조
 - 기자 미팅 및 기자 관계 개선
 - 8) 월말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기간 명시)까지로 한다. 본 계약은 “갑” 또는 “을”의 사전 통보에 의해 중단될 수 있으며 중단 예정일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계약만료일 30일전에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약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지불조건】

1. 매월 (정산기준일 **삽입-25일 또는 말일**)을 기준으로 월간 단위로 정산·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월간 홍보 서비스 청구 금액은 금액원정(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매월 청구 세금계산서를 받은 “갑”은 익월 25일 “을”에게 현금으로 청구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3. 3. ‘을’의 본 계약의 수행에 따른 진행 비용(OOPE)은 매월 2항의 홍보서비스 금액과 함께(추가) 청구하며, 진행 비용(OOPE) 항목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 입력]

- 매체 구독비 - 신문을 제외한 주간지, 잡지, 전문지 및 기타 매체 구입비
 - ‘을’이 ‘갑’의 업무진행을 위해 사용하는 ‘을’의 교통비(Transportation cost)
 - 업무진행을 위한 배달비(Messenger service)
 - 자료 복사비(Photo copy), 리포트 등의 바인딩비(Binding cost)
 - 언론 매체 섭외 시에 발생하는 식음료비 등
 - 월 전화비용 (월 5만원 청구)
 - 기사리뷰 비용 (월 35만원 청구)
 - 업무 진행을 위한 번역비
 - 기타 비용 :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갑’의 승인을 받아 청구하되, 외부협력업체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을’은 진행 비용에 17.65%의 대행사 수수료를 더하여 ‘갑’에게 청구한다.
4. PR 서비스(‘Appendix A’ 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사전 협의를 통해 별도 청구하기로 한다.
5. 대금지불을 30일 이상 지연 시, 대금지불 기일을 기준으로 매 1일당 5/1,000의 지체상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제5조 【추가 업무 프로젝트】

1. 월 리테이너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는 프로젝트로 간주하며, 사전에 협의 하에 추가 예산을 통해 진행 한다.
2. 본 계약 업무 진행 외 별도로 개별 프로젝트 발생 시 사전 협의 하에 추가 계약서 대신 견적서 로 갈 음할 수 있다.

제6조 【권리, 의무의 양도 및 하도급 등의 금지】

1.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 상 ‘을’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변경】

1. ‘갑’과 ‘을’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E-MAIL포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갑’의 계약의무 불이행
 - 가. 의사결정 유보 등으로 업무진행이 어려울 경우
 - 나. 본 계약에 의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 2) ‘을’의 계약의무 불이행
 - 가. 제2조에 명시된 대행서비스를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 나. 관련 법규, 제 3자의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침해했을 경우
 - 다. ‘갑’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활동에 협조했을 경우

[여기에 입력]

라. 업무 수행 시 보안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 3)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화의, 파산신청, 청산, 해산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회사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와 쌍방이 이해할 수 있는 사유(일정의 연기 등) 발생 시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갑’ 또는 ‘을’이 해지발효시점으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하기로 하며,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을’의 실제 업무수행내역에 대한 대가는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정산, 지급하기로 한다.
3. 본 계약 내용의 변경, 수정 또는 개정은 ‘갑’과 ‘을’ 쌍방간의 별도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1. “을”이 제2조 및 본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이 “을”의 귀책사유로 제2조 및 본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을”은 배상해야 한다.
3.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시에는 계약해지 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소요경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계약해지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배상해야 한다.

제9조 【직원 고용금지】

1. ‘갑’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을”의 임직원을 채용하거나 이직할 것을 제안할 수 없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위반하여 ‘을’의 임직원을 채용한 경우 ‘갑’은 해당 임직원이 퇴사한 월을 포함하여 직전 12개월간 ‘을’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등(급여, 퇴직금, 상여금, 인센티브, 수당 등 명칭을 불문하고 위 기간 중 ‘을’이 지급한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위약벌로서 ‘을’에게 지급한다. 또한 ‘갑’은 위와 같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적용】

본 계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르고,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협약서를 첨부하여 효력을 발생시킨다.

제11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합의하에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에 대

[여기에 입력]

한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을 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최종 해결한다..

제13조 【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작성일 : 202 년 월 일(작성일 기입)

<p>(갑)</p> <p>주 소 :</p> <p>회 사 명 :</p> <p>사업자등록번호 :</p> <p>대 표 자 :</p> <p>연 락 처 :</p>	<p>(인)</p>
<p>(을)</p> <p>주 소 :</p> <p>회 사 명 :</p> <p>대 표 이 사 :</p> <p>사업자등록번호 :</p> <p>연 락 처 :</p>	<p>(인)</p>

###